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25
----------	------

2018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18년 3월 20일
- 다. 회부일 : 2018년 3월 26일
- 라. 상정일 : 제28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4월 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변서영)

가. 제안이유

-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규정의 법령상 근거 및 송부기한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무관할 등록의 통일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이륜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 사무위탁 범위를 사용신고 외 변경·폐지 신고까지 확대함(안 제4조제1항).
- 2)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 전산 송부 기한을 10일로 일원화 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18. 1. 11 ~ 2018. 1. 31)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¹⁾에서 규정한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제도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 외 구역의 등록관청에서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위탁사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보완사안²⁾」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 위탁 범위를 확대(사용신고 → 변경, 폐지 신고까지) 보완하고 관련 서류 전산 송부기한을 일원화(10일, 14일 등 → 10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나.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범위 등 보완(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범위 중 이륜자동차에 관련한 근거 법령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³⁾에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⁴⁾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이륜자동차 ‘사용(취득)신고’에 한정된 위탁사무의 범위를 사용신고 이외에 ‘변경·폐지신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보완하여 이륜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 이륜차 사용신고 절차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이륜자동차 사용·변경·폐지 신고 의무 규정

- 1)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2)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보완사안 송부(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599(2017.4.10.))
-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안 제4조제2항은 자동차 취득세 등 신고사무의 위탁 처리 시 지방 자치단체 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의 전산 송부기한을 기존 각각 ‘10일, 14일’로 규정하던 것을, ‘10일’로 일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위탁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017년 사무위탁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등 시도간 신고실적 규모>

구 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자치구세)	
		취득(사용,이전)	변경	말소(폐지)
타시도 자동차 서울에서 등록	건수	211,360	9,049	33,148
	금액(천원)	382,419,283	136,825	511,672
서울 자동차 타시도에서 등록	건수	169,831	23,986	230,379
	금액(천원)	218,199,211	362,585	3,462,985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위탁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부의 기본안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의 자치법규 기본안 보완사안 통보(2017. 4. 10)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재무국은 보완사안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위탁사무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법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5
----------	------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규정의 법령상 근거 및 송부기한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무관할 등록의 통일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륜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 사무위탁 범위를 사용신고 외 변경·폐지 신고까지 확대함(안 제4조제1항)
- 나.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 전산 송부 기한을 10일로 일원화 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미첨부사유서 별첨)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원안동의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8. 1. 11 ~ 2018. 1. 31)결과 :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붙임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 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외의 지역에</p>	<p>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p>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취득세 신고 서류: 10일 이내
2.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서류: 14일 이내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관련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2133-3357)